

2001. 12.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I. 검토방향

- 충청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200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의 대부분이 국비 지원에 의해 운용되는 예산이나
- 교육정책 및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되고 있고, 교육계 내부의 갈등과 학교와 학생간의 이질감이 심화되고, 교원정년조정, OECD 수준의 교육여건개선사업 및 교육투자수요의 증가로 지방교육재정여건은 더욱 더 악화될 전망이므로
- 지난 97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예산편성 추이와 예산심의 때마다 반복 지적된 사항을 조명하고
- 다음과 같이 역점을 두어 분석 검토 하였음.

첫째, 관계법령 및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지침 준수

둘째, 경비부담의 적법성

셋째, 사업설정의 합목적성

넷째, 사업량(물량) 산정의 적정성

다섯째, 편성단가의 현실성

여섯째, 지출의 효율성

일곱째, 행정절차의 사전 이행여부

II. 제안서류 및 서식

1.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 4(예산안의 첨부서류)

- 가. 예산편성 기본지침
- 나.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
- 다.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 라. 명시이월비 설명서
- 마.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 바.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발행 및 상환실적·전년도와 당해연도말의 현재액추정 및 연차별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 사. 공유재산의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당해연도 말에 있어서의 현재액의 추정액에 관한 조서
- 아. 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 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조서
- 자. 계속비 조서
- 차. 지방재정계획서
- 타.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 파.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2.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 지침(117쪽)

가. 예산총칙

나. 세입세출예산

- (1) 총괄표
- (2) 관별예산
- (3) 기관별 세출예산(별첨2호서식)
- (4) 세입·세출예산사항 설명서(별첨3호서식)
- (5) 세출예산 성질별 조서(별첨4호서식)
- (6) 세출예산 조서(별첨5호서식)
- (7) 세입·세출예산 각목 명세서(별첨6호서식)

다. 계속비 조서(별첨7호서식)

라. 명시이월사업 조서(별첨8호서식)

마. 지방채 조서(별첨9호서식)

바. 채무부담행위 조서(별첨10호서식)

3. 검토의견

가. 지방재정법령이 정하는 예산안 제출시 제출할 서류는 모두 제출하였으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세입세출예산 각목 명세서는 미제출

나. 세출예산 성질별 조서

-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편성지침서(122쪽)로 시달한 서식에 의거 “경직성 경비,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으로 구분해야 하는데
- 인건비, 경상사업, 시설사업, 채무상환, 예비비등으로 구분 작성하여 제출

다. 예산총칙의 정의

-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총칙 제8조의 경우 기구·직제 변경시에는 지방재정법령에 의거 예산 “이체” 만 가능함에도
- 법정과목인 장·관·항의설치·개폐 또는 명칭변경과 예산의 이용(移用)을 추가하고
- 행정과목인 세항의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전용이 가능함에도 불필요하게 예산총칙에 이를 명시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되며
- 예산총칙 제9조에 목적지정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경 예산편성을 못할 경우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한 것은
- 예산편성 및 심의요구의 책임은 집행부에 있음에도 귀책사유가 없는 의회의 “의결을 간주처리한다”는 것은 모순일 뿐만아니라, 현행 지방자치법령에 위배되고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예산총칙 제9조의 기재내용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Ⅲ. 교육재정 추이 및 2002년도 예산개요

1.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가. '97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24.4%

나. '98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7.1%가 증가 되었으나

다. IMF 한파로 인하여

'99년도에는 '98년도 대비 14.6%가 감소 되었으며

라. 2000년도에는 '99년도 대비 18.2%가 증액된 7천 527억 4,336만 3천원을 요구하였고

마. 2001년도에는 2000년도 대비 7.9%가 증액된 8천 122억 2,394만 7천원을 요구 하였으며

바. 2002년도에는 2001년도 대비 9.2%가 증액된 8천868억 9,905만4천원을 요구하였음.

2. 세입예산의 재원별 부담은

가. '96년도 국비지원액은 5,124억 5,752만 8천원으로
국비부담율은 91.6%고 지방비는 8.4% 이었고

나. 2000년에는 국비 87% 지방비 부담 13% 이었으며

다. 2001년에는 국비 81% 지방비 부담은 19%로 계상하였고

라. 2002년에는 국비 83.1% 지방비부담은 16.9% 계상하였음

3. 교육비 특별회계 자체 세입예산

가. '99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18.2%를 감액하였으며

나. 2000년도에는 114%가 증가한 850억 7,648만원을 계상,
그 중 지방채는 371억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 라. 2001년도에는 2000년도 대비 54.9% 증가(534억 3,593만 2천원)한 1천 508억 2,141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 마. 2002년도에는 2001년도 대비 0.6%감소(8억4,857만6천원)한 1천499억 7,283만 6천원을 계상하였음

4.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인건비는

- 가. '97년도에 4,695억 9,642만원
- 나. '98년도에 전년대비 4.9%,
- 다. '99년도에 전년대비 0.8%가 증액 되었으나
- 라. 2000년도에는 정년단축 및 구조조정 등으로 전년대비 32.0%를 감액한 3,382억 6,277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 마. 2001년도에는 2000년도 대비 11.9% 증가한 3,785억 1,614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 바. 2002년도에는 2001년도 대비 4.7%증가한 3,880억 2,881만 6천원을 계상하였음

5. 물건비는

- 가. '97년도에 710억 8,082만 8천원
- 나. '98년도에는 전년대비 20.2% 증액
- 다. '99년도에는 전년대비 36%가 감액 되었으나
- 라. 2000년도에는 전년대비 73.5%가 증가한 949억 4,156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 마. 2001년도에는 전년대비 16.9% 증가한 1,109억 9,091만 4천원이고
- 바. 2002년도에는 전년대비 7.6%증가한 1,193억 6,718만 8천원을 계상하였음

6. 경상이전비는

- 가. '97년도에 482억 9,058만 8천원
- 나. '98년도에 전년도 대비 9%가 증가 되었으나
- 다. '99년도에는 전년대비 78.3%가 감액 되었으며
- 라. 2000년도에는 전년대비 1,713.0%가 증가된 2,084억 5,300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 마. 2001년도에는 전년대비 8.2%가 증가된 2,256억 1,586만 5천원을 계상 요구 하였으며
- 바. 2002년도에는 전년대비 6.7%증가된 2,489억 1,446만 7천원을 계상하였음

7. 그리고 자본적 지출은

- 가. '97년에 1,014억 2,423만 1천원
- 나. '98년에는 전년대비 6.2%가 증액 되었고
- 다. '99년에는 전년대비 37.6%가 감액되었으며
- 라. 2000년도에는 전년대비 29.4%가 증액된 870억 8,123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 마. 2001년도에는 전년대비 15.0%가 감액된 740억 1,977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 바. 2002년도에는 전년대비 52.7% 증액된 1,111억 9,537만 9천원을 계상하였음

8. 물건비중 관서운영비는

- 가. '97년에 35억 8,111만원
- 나. '98년에는 전년대비 12.9%
- 다. '99년에는 전년대비 36.5%가 증액되고

- 라. 2000년도에는 전년대비 72.2%가 증액된 95억 1,397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 마. 2001년도에는 전년대비 25.8%가 증액된 119억 6,439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 바. 2002년도에는 전년대비 29.6%증액된 154억 6,348만원을 계상하였음

9. 그리고 사학지원비는

- 가. '97년도에 421억 5,875만 1천원
- 나. '98년도에 전년대비 8.3%,
- 다. '99년도에 전년대비 1.7%을 증액 계상하였고
- 라. 2000년도에는 전년대비 19.1%가 증액된 553억 4,969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 마. 2001년도에는 전년대비 17.6% 증액된 650억 9,087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 바. 2002년도에는 전년대비 21.2%증액된 789억 1,408만 3천원을 계상하였음

IV. 검토의견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8,868억 9,905만 4천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 8,122억 2,394만 7천원보다 9.2%(746억 7,510만 7천원이 증액)증가한 규모입니다

1. 세입예산

가. 세입예산 개요

○ 세입예산은 재원별로

- 국가부담 수입이 83.1%인 7,369억 2,621만 8천원
- 도전입금인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이 9.7%인 857억 3,794만 4천원
- 자체수입인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이 7.0%인 622억 2,695만 6천원
- 기타 지원금이 0.2%인 20억 793만6천원입니다.

「표1」

연도별 재원별 세입예산 구조

(단위 : 천원)

연도별 재원별	'99		2000		2001		2002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합 계	636,620,456	100	752,743,363	100	812,223,947	100	886,899,054	100
국가부담수입	596,866,601	93.8	655,357,883	86.9	661,402,535	81.4	736,926,218	83.1
교육재정교부금	420,203,001	66.0	457,630,000	60.8	542,417,000	66.8	617,302,762	69.6
양 여 금	145,395,000	22.8	163,059,000	21.7	114,245,447	14.0	116,657,321	13.2
국고지원금	976,600	0.2	3,860,883	0.4	4,740,088	0.6	2,966,135	0.3
교육환경개선료부금	30,292,000	4.8	30,808,000	4.1	-	-	-	-
자치단체부담수입	156,951	-	4,269,380	0.6	84,076,629	10.4	85,737,944	9.7
자 체 수 입	39,596,902	6.2	93,116,098	12.5	66,744,783	8.2	62,226,956	7.0
주민부담및기타	2	-	2	-	0	-	2,007,936	0.2

※ 당초예산 기준임

나. 검토의견

(1) 국고지원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은 전년도보다 각각 증액되었으나 국고보조금은 44억 2,141만원이 감액 내시되었음

(2) 법정전입금

2002년도 세입예산에 법정전입금으로서 도세전입금(66억 8천만원)과 지방교육세(787억 3천 7백만원)은 전액 계상되었음

(3) 비법정전입금

- 시군에서 지원되는 전입금(도서관)
- 지방세법 제260조의3의제2항에 의한 지방교육세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전입금과
- 학교용지확보에 관한특례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부담금 수입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4) 재산임대수입

- 예산편성지침상 2001년도 결산예정액과 최근 3년간의 평균신장을 및 2002년도 특수요인을 감안 계상토록 되어있는바
- 대지료, 대가료, 임야수입의 감액계상배경과 기타 임대재산임대수입을 전년도보다 9,748만 6천원 증액 계상한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요구됨.

(5) 재산매각수입

-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당초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계상하지 않음(매년 반복 지적된 사항)
※ 노후컴퓨터등 기자재 대체비(253백만원 요구)

(6)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시도별로 책정한 적정수준의 인상을과 최근 3년간의 평균징수율을 감안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세입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는바
- 입학금수입(전년대비 1억 1,572만 8천원 감소)과 수업료 수입(전년대비 51억 5,918만 2천원감소)을 감액 계상하였고
- 교육청 홈페이지상에 충청북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 관한규칙 제3조 별표1(2000.2.29개정)에 의하여 1급지(시지역의 경우)1인당 입학금 1만 1800원을 계상하여야 하나 이를 계상하지 않은데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7) 수수료 수입

- 시험검정사업비등 수익자부담원칙의적용이 가능한 경비는 최대한 수지균형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 입학수험료 및 시험검정비 세출예산소요범위내에서 요율을 현실화 하도록 되어있으나(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지침 39쪽, 57쪽)
- 다음 「표2」에 나타나있듯 수지균형이 맞지않으므로 검정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표2」

2002년도 시험검정수수료 수지분석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수 입	지 출	
		금 액	내 역
○ 중입검정고시	무 료	2,140	· 업무추진비 640천원포함
○ 고입검정고시	20,000	48,020	· 급량비1,200, 수당6,300, 여비1,320, 업무추진비2,000
○ 고등학교입학시험	67,100	32,310	
○ 일반직공채시험	10,000	7,500 (교육전문직)	· 초등3,069, 중등 4,431
○ 유치원교사	7,500	초등교사 임용포함 계상	
○ 초등교사임용 후보자선정시험	6,250	26,827	· 일반운영비8,400, 급량비460, 수당12,688, 여비4,290 업무추진비1,000
○ 중등교사임용 후보자 선정시험	38,000	88,145	· 일반운영비60,000, 급량비1,500, 수당11,310, 여비4,135, 업무추진비1,200
○ 특수학교교사임용 후보자선정시험	1,250	?	
계 8건	150,100	204,942	

(8) 잡수입

위약금(2억 8,604만 9천원)등 감액 계상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 세출예산

가. 세출예산 개요

○ 세출예산안의 구조별로는

- 급여 및 복지예산 62.1%인 5,512억 1,652만 5천원
- 학교교육비 32.7%인 2,902억 9,468만 1천원
- 교육행정비 2.3%인 199억 2,025만 3천원
- 문화및평생교육비 0.2%인 13억 4,009만 9천원
- 기타경비 2.7%인 241억 2,749만 6천원으로 계상요구한바 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음.

나. 검토의견

(1) 예산편성 운영관리의 일관성 문제

- 2001년도 예산심의 요청시 집행부에서는 세입세출 예산 각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출예산의 경우 “본청과 지역청”으로 구분작성하여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였고
- 의회의 예산심의 확정후에는 “예산과목” 순으로 인쇄하여 제출하고 있으나
- 일부 예산과목의 경우 2001년도 세출예산조서와 2002년도 세출예산조서의 2001년도 기재란의 기재 금액이 상호 일치하지 않으므로 시정이 요구됨

※ 학교회계 전출금

- 2001년도 예산조서 : 959억 3,191만 5천원
- 2002년도 사항설명서의 2001년도예산란
: 958억 8,480만 6천원

(2) 예산외 재정운영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총계표(995쪽 및 996쪽)에 의한

- ① 세입예산 초과수납액(501억 9,429만원)
- ② 세출예산 불용액(220억 7,942만원)
- ③ 세출예산 이월액(659억 2,202만원)등은 총 **1,381억 9,573만원**인바

2002년도 세계잉여금으로 224억 2,965만원만 계상한 것은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는 지방재정법 제29조의 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3) 2001년도 세출예산운영

- 2001년도 세출예산성립후 (498억 4,406만원)과 이월액(659억 2,202만원)중 명시이월예정액
- 2001년도 급여·복지예산 불용예정액이 110억 6,496 만원 임에도 2002년도에 40억 2,147만원을 증액한 것과 관련 급여복지예산 과대계상으로 인한 연금 부담금 등 초과 비용 발생은 없었는지 설명이 필요함

(4) 지방채 상환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시한 기채이자 (70억 1,787만 8천원)와 기채보전분(86억 6,461만 2천원)은 도합 156억 8,249만원으로서
- 2002년도 지방채 상환계획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54억 6,598만 8천원을 계상한바
- 교육인적자원부 내시액보다 2억 1,650만 2천원 과소 계상한 것은 시정이 요구됨.

(5) 성과급 예산

- 2002년도의 교원 및 교육전문직 성과상여금으로 70억 9,891만원을 계상한바
- 교원 성과급 지급에 대하여는 2001년도분에 대해서도 교원 단체의 수령거부 및 반납운동으로 문제점이 있는 교육계 현안이므로
- 그간 교원성과급 예산 집행상황과 문제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 2002년도 성과급예산에 대하여는 교육계등 공무원 사회의 공감대가 정립될 때까지 예산계상에서 유보하거나 차라리 교원등 공무원보수규정에 반영 공무원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거나 공감할 수 있는 업무성과 평가방법을 개발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6) 사립학교 재정지원문제

- 사립학교 재정지원문제는 매년 예산 심의시 반복 지적된 사항이며
-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지침에
 - 사립학교 재정지원금은 **기준재정수입** (입학금+수업료+법정전입금)과
 - **기준재정수요액**(공립학교 수준의 인건비와 학생 1인당 경비기준)을 산출
 - 지원기준을 마련 재정결함 지원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 다음 「표3」 과 같이 '97년 이후 교육비 특별회계 총예산의 증가율은 연평균 8.7%이나 사학지원비 규모는 이 보다 4.1%가 높은 12.8%이고
- 2002년도 예산요구액중 2001년도
 - 공교육 인건비는 4.7%, 시설비는 23.2%를 증액 계상하였으나
 - 사학지원 인건비는 19.5%, 운영비는 3.8%를 시설비는 98.5%를 각각 증액 계상한바
- 사학지원 인건비도 공립학교 교원수준에서 동일하게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공교육 인건비보다 무려 14.8% 증액계상한 것은 과다계상한 것은 아닌지

- 또한 법인의 법정부담금 초과지출시에 초과금액을 사립학교 기준재정 수입액에서 제외하거나 초과지출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교육시설비를 추가로 지원토록 되어있는데 사립학교 법인에서 법정부담금을 초과 지출한 내역은 어떠한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연수경비(18백만원) 및 원어민 강사수당(38백만원)지원과 예산은 사립학교 자체 운영비로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표3」

전년도 대비 사학예산 증가율

(단위:%)

구 분	'97	'98	'99	2000	2001	2002	연평균	2001년대비 2002년요구
총예산	24.4	7.1	△14.6	18.2	7.9	9.2	8.7	○ 인건비 - 공교육7.4%증 - 사학19.5%증
사 학	8.7	8.3	1.7	19.1	17.6	21.2	12.8	○ 시설비 - 공교육23.2%증 - 사학98.5%증

(7) 운영수당 계상의 문제점

(가)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편성지침

-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지침(99쪽)상 운영수당은
 - ① 위원회 참석수당 ② 일.숙직비 ③ 시험관리비 ④ 교육기관강사료, 자체강사료 등과 ⑤ 직원능력개발 지원비를 계상하고
- 위원회 참석수당은
 - ①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과
 - ② 법령, 조례등에 수당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관계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계상토록 되어 있으며
- 시험관리비는

시험실시계획에 따른 소요경비를 편성하되 단, 각급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고사중 당해기관 교관요원이 출제, 채점 및 문제선정, 감시, 문제편집,편찬을 하는 경우는 시험관리비를 계상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

(나) 문제점

이에 대하여는 다음에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8) 위원회 활동수당

- 위원회 수당은 일당으로 기본료 5만원을 계상하고 초과료로 3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2만원의 초과료를 계상토록 되어 있으며

- 공무원은 직접 자기 소관 사무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음
- 다음의 위원수당은 예산편성지침상 단가보다 과소 계상한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특수교육 운영위원수당(3만원)
-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제작위원수당(2만원)
- 지역교육청의 각종위원회 위원수당(3만원)

(9) 행사관련 예산

-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설치되었다면 위원에 대한 수당 계상이 가능할 것이며
-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제수당지급규칙 제2조의 위원【①시험②체육③도서간행편찬관련위원과④각종 전시회·경연대회 심사위원⑤법규및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에 대한 수당액은
- 동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도 정부예산 단위단가를 기준으로 교육감이 정한다고 되어있으므로
- 행사관련 운영수당은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으면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 「표4」와 같이 유사한 성격의 행사의 편성단가 적용이 행사주관부서에 따라 다른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고 또한 행사관련 「위원회」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표4」

행사관련경비(수당)단가 계상현황

(단위:만원)

구 분	출제	채점 심사 심판	감독	기 타
1. 발표대회				
가. 유아그리기,나의주장,아가모운동	-	3	-	
나. 교사현장연구대회 발표	-	4	-	
다. 교실수업개선 연구발표대회	-	4	-	◦ 과정심사.수업현장심사 2종계상
2. 학력경시대회				
가. 국어	4.5	2	1.5	
나. 외국어	4.5	2	1.5	◦ 말하기평가심사수당 2만원 별도
다. 수학, 과학	4.5	3	1.5	
라. 초등수학, 과학	0.3 (문항)	3	1.5	◦ 문제선정심사의수당 4만5천원 별도
3. 경진대회				
가. 컴퓨터, 타자 경진	4.5	3	1.5	
나. 홈페이지 경진대회	4.5	3	1.5	◦ 심사수당과 채점수당 구분 2가지 계상
다. 사이버 사냥대회	-	3	-	
라. 학생과학발명품	-	3	-	◦ 지도교사논문심사 4만원 별도
마. 청소년 과학경진	-	3	-	
4. 기타행사				
가. 충북2002 직업교육축제	-	3	-	◦ 행사관리요원관리수당 1만원 별도
나. 충북영농학생진진대회	0.3 (문항)	학생3 교사4	-	◦ 평가항목 및 척도 구성수당 2만원 별도
다. 충북학생정보올림피아드				
- 경시부분	4.5	3	1.5	
- 공무부분	-	3	-	
- 지도사례 발표부분	-	4	-	
라. 교육용S/W전람회 공모전	-	4	-	
마. 과학전람회	-	3	-	
바. 체육행사(3건)	-	2	-	◦ 교직원체육대회외2건

※ 지역교육청은 본정보다 수당단가가 낮게 계상되거나 ①심사수당만 계상하거나 ②출제수당은 객관식시험수당으로 하고 채점은 심사수당으로 ③출제없이 심사 또는 감독수당만 계상하는등 본청과 지역청간, 지역청 상호간에도 적용 기준이 다름.

(10) 교육과정개발 등

-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은 맥락에서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 개발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지침이
정하는 단가에 의하여 예산계상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 「표5」와 같이 사업성격이 유사한 경우에도 「적용단가」가
다르거나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대하여 중복투자
하는 것은 아닌지, 사업량 설정은 타당한지 설명이
요구됨.
- ※ <예시> 교육용 S/W공모심사수당 계상
- 교육정보화과 : 전람회 예산에 계상
 - 교육과학연구과 : S/W보급사업예산에 계상

「표5」

교육과정개발등 운영수당 계상현황

구 분	단 가	사 업 량	기 타
1. 유치원교육과정연구	5만원	2회×20명	• 편집수당별도
2. 제7차교육과정연구개발	5만원	90명	• 지역청:3만원
3. 제7차교육과정운영위원회	5만원	40명	
4. 수준별학습지도자료 개발	4만원	2명×10과목×2회	
5. 교과교육연구 활동심사	2만원	48×2회	
6. 수업연구계획서 심사	2만원	15명×15과목	
7. VOD자료 제작	3만원	20명×10회	
8. VOD자료 편집	9만원	200편	
9. 교육용S/W공모	4만원	5명×3일	
10. 교육용S/W개발보고서심사	4만원	5명×3일	
11. 특별연구교사제 연구계획	4만원	5명×3일	

※ 지역청의 교육자료개발수당 : 대부분 3만원 단가 적용

(11) 시험관련예산

- 예산편성지침상 시험수당은 ①출제비(객관식 문제당3천원, 주관식과목당4만원)②채점비(객관식10문제당11원,주관식 10부까지 기본료 3만원)③문제선정 심의비(과목당 4만5천원)④문제편집 및 편찬비(일당 1만원)⑤시험 감독비(평일 1만5천원, 휴일3만원) ⑥면접.실기채점비(일당 5급4만원,6급이하2만원) ⑦감금수당(일당3만원)등 7종만 인정하고 있음에도
- 다음 「표6」 과 같이 7종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경우 예산 계상기준이 각각 다르고 면접 및 실기시험의 경우 채점비 이외의 수당을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 지침을 확대해석 계상한 것은 아닌지 설명이 요구되며
- 또한 교교입시관리 감독수당을 1인당 일당을 1만원 으로 계상(사항설명서 97쪽)한 것은 예산편성단가 (평일1만5천원, 휴일3만원)보다 과소계상한 것으로 사료 되고
- 교육훈련기관의 평가고사중 교관요원이 출제, 채점, 문제선정,감시,문제편집,편찬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 관리비를 예산에 계상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바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지침99쪽)
- 단재교육연수원등의 교육훈련기관의 연수와 관련한 시험관리예산은 모두 교관요원이 아닌 외래강사 또는 외부인사에게 계상한 것인지 설명이 요구됨.

「표6」

면접 및 실기시험수당 계상현황

시험및고사명	출제 수당	채점 수당	문제 수당	감독 수당	편집 수당	기타
1. 일반직공무원시험		○				
2. 지방공무원특채시험		○				
3. 초등교육전문직임용시험 • 면접 • 컴퓨터실기 • 영어회화	○ ○ ○	○ ○ ○				
4. 초등교원 임용후보자	○	실기○ 면접○				• 업무추진비 100만원별도 • 여비429만원별도
5. 교감자격연수면접고사 • 면접 • 컴퓨터실기	○ ○	○ ○	○ ○	○	○	• 초등 및 중등 각각 계상
6. 중등교육전문직 임용 • 영어과 면접 • 컴퓨터실기 • 면접	○ ○	○ ○ ○				
7. 중등교원임용후보자	○	○				• 수업실기출제및 채점수당별도 • 여비(14,135천원) 및 업무추진비 120만원별도

(12) 야간지도수당

- 예산편성지침상 일·숙직비의 편성단가는 1일 1인당 1만원인바
- 기숙사 생활지도교원 일·숙직수당을 1일 1인당 1만5천원씩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사항설명서 124쪽)
- 농업계 공동실습소 야간지도수당(1일 1만5천원×1명×5일×25기)의 계상근거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됨.

(13) 교육강사수당

- 예산편성지침상 강사수당은 시간당 ①특별강사 10만원(초과5만원)②일반강사 7만원(초과3만원)③기타강사 5만원(초과2만원)을 계상토록 되어 있으나
- 초등교육 제7차 교육과정연수강사 31명에 대한 초빙 계획과 예산편성지침상의 단가이하로 계상하거나 산출기초를 시간단위로 하지 않은 다음의 교육·연찬 예산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특수학교 직업담당교사연수(시간당 3만원)	
• ICT활용교육강사	(시간당 2만원)
• 산학겸임 교사강사	(시간당 2만3천원)
• 졸업생을 활용한 직업교육	(학교당 6명×2만3천원)
• 학생 1일 탐구교실강사	(시간당 2만3천원)
• 원어민 강사수당	(시간당 3만원)

※ 지역교육청 강사수당 계상

- 편성단가준수 : 교원정보화교육, ICT 활용강사수당(5만원)
- 기타 : 최저시간당 2만3천원~3만원 계상(편성단가 이하)

(14) 임차료

- 예산편성지침상 각종회의 및 행사를 위한 장소임차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각종시험 및 교육은 각급학교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교직원체육대회 경기장 임차료등(심판수당 480천원 별도)을 계상 요구한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닌지
- 2001년도 임차료예산(9억,6,602만원)대비 5.7%를 증액한 10억 2,128만 1천원을 계상한 배경과
- 교육청 본청 임차료 요구예산 9억 9,260만원중
 - 원어민 교사 주택임차료 1억 5천만원
 -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교육임차료 7억 4,075만원과
 - 기타 계상 내역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15) 다음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가. 교육여건개선 사업관련
 - 2001년도 도의회 승인 받은 지방채발행 상황
 - 명예퇴직, 기간제교사 및 전임강사활용과 교원충원계획
- 나. 컴퓨터,멀티미디어 기자재의 대체, 신규구입과불용품 처리 및 교단선진화 사업투자
- 다. 제7차 교육과정개발 및 시·도공동학습자료 개발
- 라. 국제행사(자매결연)(21백만원)
- 마. 대여장학금 출연(38억 9,960만원) 및 직원능력개발지원
- 바. 자연농과운영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의차이
(세출 1억 1,736만원)

사. 주요자산취득사업

- 승용, 승합차량 및 통학버스 확보계획(25대)
- 본청전화 및 OA시스템사업
- 책결상 및 사물함확보계획(15억 2천만원)

아. 주요시설운영 및 보수

- (1) 전산실 확장 및 방재시스템(3000만원)
- (2) 본청시설 보수(11건 16억 5,206만원)
- (3) 수영장운영 및 기숙사내부시설
- (4) 테니스장이설(5000만원)
- (5) 교육과정 개편시설사업
- (6) 중앙도서관 보일러보수(5억 3,135만원)

자. 시설부대비(3억 7,296만원)산출기초

차. 중식대 지원사업

카.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학교간 경기대회 및 직원 체육대회 개최경비등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발췌요약(교육인적자원부)

1. 예산편성기본지침의 구속력(P 37)

- 법령의 구체적인 집행명령(훈령)으로서 구속력을 지님
-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법령 위반

2. 세입예산 편성기본지침

- 가.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 : 당초예산에 계상
- 나. 국고지원금 : 내시된 금액만 계상
- 다. 법정전입금 : 정산분 철저히 포착 법정기간내에 예산계상
- 라. 수업료 : 2002년도 인상분 당초예산에 계상
- 마. 폐교재산 : 활용계획수립, 재산수입증대, 유상대부원칙
- 바. 시험검정사업비 : 최대한 수지균형유지
- 사. 지방교육재정 수요를 유발하는 원인자부담원칙의 철저적용
- 아. 2001년도 예산분석결과 지적사항 및 2000년도 결산분석결과 지적사항 철저히 반영

3. 세출예산 편성기본지침

가. 일반원칙(P 40)

- (1) 재원배분원칙 : 교육청과 학교에서 집행할 재원구분 하되 교육청 수행사업은 최소화, 최적화하여 예산편성
- (2) 준비하지 않은 일회성사업 지양, 추진중인 사업완성에 역점

(3) 성과주의 예산편성

- 연례답습적인 모든 사업은 영(zero)기준 관점에서 평가 최적 예산편성
- 유사한 사업의 분산, 중복투자지양 → 기능별 중점예산 편성

나. 시설사업예산(P41)

- 학교 신.증설 : 학생수용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 계상
- 시설유지보수비 : 예산편성전 실태과악후 예산계상
- 대규모 투자사업
 - 투자심사 확행
 - 책임자 실명관리
 - 설계 및 계약이 완료된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 설계후 총사업비가 과도하게 증가하면 타당성조사 재실시, 책임자 제재강화

다.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한 감축관리 체제운영(P42)

(1) 경상적 경비

- 부서별 기본운영비 표준화 및 총액배분
 -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 경상적운영비 최소화
- 사업비 비목이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등 경상적 경비만 으로 편성된 사업은 과감히 폐지

- 조례에서 인정되지 않는 관사는 매각.임대하고 불요불급한 관사구입 예산편성 금지
 - 각종회의, 협의회, 경진대회, 발표회 등에 참석하는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급식 및 간식 제공등은 최소한으로 계상하고 예산편성과목을 확대 해석하여 편성 금지
 - 승용차 교체, 신규구입예산은 최소배기량(경형)차량구입비 반영
 - ※ 국가에너지 추진위원회 : 경차구입(50%이상) 권고
- (2) 인건비(P42)
- 예산불용을 최소화
 - 수당 : 법규상 명확한 지급근거없이 어떤 명목으로도 개인에게 수당성격으로 지급하는 성격의 예산편성불가
- (3) 외부단체지원예산(P43)
- 단체지원예산 전면 재검토
 - 운영비보조금지, 사업비중심 최소경비지원
 - ※ 연례적, 관행적 보조금 지원금지
 - 각종행사 및 체육대회 등 출전경비 지원 최소화
 - 주관(주최)기관의 예산 최대한 활용

라. 사립학교 재정결합 보조금 예산편성

- (1) 기본원칙
- 추경을 전제로 예산 과다편성금지
 - 각종 기준 및 통계는 최근 2~3년간의 결산을 고려하여 편성
- (2)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중.고등학교
- (3) 지원제외 : 사립초등학교(특수학급은 제외), 특수목적고교등 공납금이 자율화되어 있거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 이상인 학교
- ※ 공민학교, 공동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는 재정여건 감안 지원
- (4) 기준재정수요산정 :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하여 산정하되 공립학교(계열별, 학교급별, 규모별)기준으로 계상

(5)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 전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입학금 수업료 및 법정전입금을 자체기준을 정하여 산출
- 법인의 법정부담금을 의무적으로 전입토록하고 부담능력이 없는 법인은 연차적 부담계획을 제출받아 부담 유도

(6) 보조결정 및 정산(P46)

- 기준재정수입액은 운영비에 우선적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를 인건비에 충당토록 하여 운영비 지원을 최소화
- 인건비, 목적지원경비, 시설비는 정산

(7) 학교법인의 자구노력 유도

- 저수익성 재산(토지, 임야등)을 고수익성 재산으로 대체권장
- 법정부담금 초과 전출시에는 초과금액을 기준재정수입액에서 제외하거나, 초과전출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교육시설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법인의 학교운영 기여도 반영

마.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지침

○ 재정규모의 적정화를 통한 건전재정의 견지

구 분	한 도 비 율
일시차입금	전체예산의 10% 이내
명시이월비	명시이월비 제도 취지에 맞는 사업
채무부담행위	전체예산의 3% 이내
지 방 채	채무비율 10%이내(채무부담행위 제외) 단,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지원된 융자금, 퇴직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퇴직수당부담금 지급 및 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2001.7.20발표)을 위한 지방채 발행분제의 ※ 채무비율은 승인 신청 당해연도 최종확정예산기준이며, 채무총액은 누계액임
예 비 비	전체예산(당초예산)의 0.5%이상 계상

○특별교육 재정수요경비 편성지침

-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응급보전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 전체예산의 0.1%이내의 범위에서 특별교육 재정경비는 계상
 -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상교육 지원을 위하여 한도액의 30%범위내에서 경상교육지원사업비 계상 가능

○시도별 업무추진비 총액관리(P49)

- 총액관리대상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 시.도별 총액 산출기준

시 도 별	한 도 액 기 준	비 고
○ 서울, 경기	○ 예산규모의 0.09%	2000년도 편성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당초예산기준)
○ 기타 시도	○ 예산규모의 0.12%	
○ 제주도	○ 예산규모의 0.31%	

- 교육감 업무추진비의 기준외 기타 사업비에 편법 편성금지
- 축.조위금 지급, 화환, 선물 전달의 경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무원 준수사항(국무총리지시 제1999-13호)을 철저히 이행
- 선심성.행사성.낭비성 예산편성방지를 위한 지침
 - 보상금은 합리적 기준에 의해 편성하여야 하며, 포괄적으로 예산 편성할 수 없음.
 - '99~2001 시.도교육청 예산분석시 지적한 바와 같이 격려금, 위문.간담회 경비 등 업무추진비성 경비의 보상금 편성을 금지

II. 예산편성기준

1. 세입예산(발취)

가. 법정전입금(P 54)

(1) 교원봉급전입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및 경기도의 교원봉급전입금
 - 교원봉급전입금= 《 [2001년도 교원봉급 실제결산예산액을 1년분으로 환산한 금액×2002년도 봉급인상율(처우개선+호봉승급분)] + [2001년도 증원교원봉급(봉급인상분 포함)》 × 당해 시·도전입률
 - ※ 전입률 : 서울은 전액, 부산은 반액,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시는 10%(경기도 포함)

(2) 담배소비세 전입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에 의한 특별시·광역시 담배소비세전입금(6대도시)
 - 담배소비세전입금= [2001년도 당해 시·도담배소비세 전입금 결산예정액 × 최근의 3개년간 평균신장율] + 2002년도 특수요인

(3) 시·도세전입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에 의한 시·도세 전입금
- 2001년 시·도세전입금 결산예정액에 시·도세 평균신장율 감안 계상

(4) 지방교육세전입금

-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교육세 전입금
- 2001년 지방교육세전입금(본세분) 결산예정액에 지방교육세 평균신장을 감안 계상

나. 비법정전입금

- 광역자치단체전입금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2조에 의한 도서관운영비등 광역자치단체의 자체재원 전입금
- 기초자치단체전입금 :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전입금
- 국고지원전입금 : 국고보조금 등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를 통하여 지원되는 전입금
- 지방교육세전입금 :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교육세 탄력세율 적용으로 추가 확보되는 전입금
- 학교용지부담금 :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 부담금

다. 재산수입

- (1) 재산수입 : 대지료, 대가료, 임야, 기타 재산임대수입 구분계상
- 산정기준
 - 2001년도 사업별 수입결산예정액×최근3년간 당해사업의 평균신장율+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상의 특수요인
 - 토지 : 공시지가
 - 기타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에 의거 산출한 가격기준

(2) 재산매각수입 :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토지매각대, 건물매각대,
기타재산매각대로구분 계상

- 산정기준 :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재산매각대×최근3
년간계약액/예정가격비율

라.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 수업료와 입학금 구분계상

- 인상율 : 정상적운영경비(인건비+운영비)의 인상율을 감안
시도별로 적정수준의 인상율 책정
- 징수율 : 최근 3년간 실제평균 징수율

마.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 산정기준 : (2002년도 요금수입별결산예정액×최근3년간
당해요금 수입평균신장율)+2002년도 특수요인

바. 잡수입

(1) 실습수입 및 기타 잡수입

- 2001년도결산예정액×최근3년간의 당해수입의 평균신장율
+2002년도 특수요인

(2) 예금이자 수입 : 정기예금이자 및 기타예금이자수입 구분

- 2001년도 결산예정액×(1+최근3개년간예금이자 평균증가율)+
2002년도 특수요인

사. 이월금

-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구분
계상

※ 수입예상가능한 세입재원전액을 당초예산에 계상

(1) 순세계잉여금 : 당해연도예산총액×최근3년간 평균세계잉여금
발생율

(2) 전년도 이월사업비 : 세입예산에 계상치 말고 전액을 현액
관리

아. 지방교육채 : 별도지방채 발행계획에 의한 지방채 수입을 계상

2. 세출예산

가. 학력신장지원

- 대상학년 : 초6, 중3, 고전학년
- 횟 수 : 연 1회(고3은 2회)
- 과 목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등
- 시도자체 학력평가 및 평가도구개발 보급을 위한 경비

나. 인건비

- 정원 : 2001년 7. 1기준(국가직 제외)
- 기타직보수
 - 법령과 조례에 의한 비정규직의 직종별 보수
 - 유치원 전임강사 및 계약제 교원보수
- 일용임금
 - 경산업무보조를 위한 상시일용잡급은 원칙적으로 계상금지
 - 시설부대비를 수반하는 건설사업에는 별도의 상용인부임
불인정
 - 정원이 증원된 부서의 기존 상용인부는 감축을 원칙으로함.
- 성과상여금 : 봉급월액×47.5%

다. 일반운영비

- (1) 업무용차량의 월정액 야간주차료 계상금지
- (2) 피복비 : 복제령에 지급근거가 있는 대상에 한함

라. 직원능력개발비

- (1) 대상 : 교육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근무직원
 - (2) 인원 : 예산허용범위내
 - (3) 과목 : 외국어, 정보화등 직무관련분야
 - (4) 지원금액 : 월5만원, 년 30만원 초과 불가
- ※ 단 EBMS담당자는 월20만원, 년80만원 초과 불가

마. 퇴직예정공무원 교육훈련비

- (1) 공무원교육원 : 1인당 25만원(2주, 숙식별도)
- (2)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1인당 29만원(1주, 숙식포함)

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기관운영을 위해 정원에 따라 지급되는 경비

- (1) 통상적인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업무비
- (2) 간담회 및 직원체육대회등 연례적인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 (3) 보도사례금 편성 금지

사. 자산취득비 : 최소금액계상

아. 임차료 : 회의 및 행사를 위한 장소 임차는 원칙적으로 금지

자. 여 비

- (1) 국내여비
 - 국내여비 단가에 의하여 계상
 - 중복출장지양, 출장기간 및 인원 최소한으로 축소 계상
 - 교육파견여비 최소한의 실소요액만 계상
 - 위탁교육등록비 : 관서운영비에 계상
 - 공사현장, 사업장 감독관의 현장체재비는 시설부대비에 포함되므로 별도 계상 금지

(2) 국외여비

- 장차관급이외의 출장시 수행자 불인정
- 유사목적의 반복 출장지양, 출장기간 단축

차. 사업추진업무추진비

- 최소한으로 편성
- 보도사례금, 유사한 명목예산 편성금지
- 간담회경비 : 교육감.부교육감 주재시는 1인당 3만원 기타는 1인당 2만원 이하 편성

카. 민간경상보조

- 신규보조 : 원칙적으로 계상 금지
 - 증액보조 : 특별한 경우외는 원칙적으로 금지
 - 보조지원 재검토
 - 공익사업실적이 빈약한 기관단체의 운영비 보조
 - 공익사업지원의 실익이 적은 보조
 - 자립능력이 있거나 수익자 부담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업
 - 동일 유사단체의 중복 보조
 - 자산취득, 건물신축등 사업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본보조
 - 상당한 규모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
 - 사업비 일부보조시 자체부담재원의 확보가능성이 불투명한 경우
 - 공익기관이 아닌 개인 또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계상금지
- ※ 예외 : 법령, 국가지원, 용도지정의 일반회계 전입금이나 기부금에 의한 것

타. 기타

(1) 시설비

- 학교시설사업비 : 2004년 개교예정인 신설학교 설계비 우선계상
- 기타시설사업비 :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 통합 계상하되 산출 초기에 구분 편성

(2) 시설부대비

- 학교시설사업비 : 실소요액 계상
- 기타시설사업비 : 예산편성 단위단가범위내에서 실소요액계상

- (3) 자산취득비 : 행정 및 지원기관용으로 지원되는 자산취득비는 필요한 최소금액을 계상하되 학교별 내역 확정

※총액편성금지

- (4) 지방채 : 차입별.원금 및 이자 별도계상
- (5) 예비비 : 전년도 실적고려 일정율을 계상하되 보수예비비 별도계상
- (6) 반환금 : 내역명기